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2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김은혜·유경준·김태흠

김형동・최승재・정운천

이명수・최형두・조수진

송석준 · 권영세 · 이양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절차상으 로는 그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전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의기간이 경과하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의 성격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절차는 충족된 것으로 보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이 미흡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담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 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 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협의기간이 지났음에도 협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계속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
한 관계기관 협의) ①・② (생	한 관계기관 협의)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	②
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다만, 협의기</u>	
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	간이 지났음에도 협의를 마치지
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	못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로 본다.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이견
	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
	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u>야 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